

■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의4서식] <개정 2016. 11. 29.>

## 사회복무요원 교육일 연기신청서

※ 교육연기 신청사유의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2일	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복무기관	복무분야	
	소집일	전화번호	
	주소		
연기대상 및 기간	교육구분 [ ] 복무기본교육 [ ] 직무교육 [ ] 복무지도교육	교육과정명	교육예정기간
	연기신청기간 20 . . . ~ 20 . . . ( )일간		
교육연기 신청사유	[ ]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		
	[ ] 본인의 직계존속 · 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(家事)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		
	[ ]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		
	[ ]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( )		

「병역법 시행령」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의 연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복무기관장

직인
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[ ] 연기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 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